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순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845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9.
발의의원 : 전순애 의원,
김이석 의원, 이상봉 의원

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, 현행 조례 중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사무감사 관련 상임위원회 절차 및 본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2조)

나.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본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3조)

다. 감사 또는 조사 관련 위원 사항 정비(안 제4조, 제12조, 제13조, 제16조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행정사무감사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 행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,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

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, 감사위원회의 편성, 감사요령,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⑤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.

⑥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

다)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바로”를 “지체없이”로, “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.”를 “구성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**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.

제4조 중 “의원”을 “위원”으로, “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는”을 “조사 시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(이하 “법””을 “(이하 “법”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”을 “관계자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의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원이”를 “위원이”로, “의원의”를 “위원의”로, “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”를 “중지시켜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의원”을 각각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의원”을 “위원, 전문위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해당기관의”를 “해당 기관의”로, “해당기관에서”를 “해당 기관에서”로, “해당기관에”를 “해당 기관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해당기관”을 “해당 기관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의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행정사무감사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,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를 따른다.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,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, 감사요령,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 ④ 본회의에서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. ⑤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	제2조(행정사무감사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 행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. ③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,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 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, 감사위원회의 편성, 감사요령,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⑤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

다)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는 바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	인하거나 반려한다. ⑥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제3조(행정사무조사) ①·② (생 략)	**제3조(행정사무조사)**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바로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(이하 “조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.	③ ---------- 지체없이 ---------- 구성한다.
<신 설>	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.
④ ~ ⑦ (생 략)	⑤ ~ ⑧ (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
제4조(사무보조자)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는 의회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	**제4조(사무보조자)** 위원---------- 조사 시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----------.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	**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**

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①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군의 하부 행정기관	2. -------(이하 "법" ----------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,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·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,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,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	**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** ①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. <단서 삭제>

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,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
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.	② 제1항에 따른 --------- 관계자는 ----------.
제12조(제척과 회피)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.	**제12조(제척과 회피)** ① 위원----------.
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 해당 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위원이 ---------- 위원의 ---------- 중지시켜야 ----------.
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	③ ---------- 위원----------.

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 해당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 위원----------.
제13조(주의의무) ① (생 략)	**제13조(주의의무)**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	② 위원, 전문위원 ----------.
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 ① (생 략)	**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**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.	② ---------- 해당 기관의 ---------- 해당 기관에서 ---------- 해당 기관에 ----------.
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③ ----- 해당 기관----------.
제16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	**제16조(징계)** ---------- 위원----------

니하거나,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.

참고 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□ 「지방자치법(법률)」(2026.3.5. 일부개정, 2026.7.1. 시행)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(조례)」(2025.7.18. 제정, 2025.7.18. 시행)

제25조(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